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340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2년 10월 17일
- 회 부 일 : 2022년 10월 21일

2. 제안이유

- 「공익신고자 보호법」(’21. 4. 20. 공포, ’21. 10.21. 시행)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2. 1. 4. 공포, ’22. 7. 5. 시행)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사·수사결과 통보 의무 규정 신설(안 제8조)

- 이첩·송부사건의 조사·수사결과를 권익위 통보 의무 조항 신설(5항 추가)

나. 공익제보자 책임감면 규정 신설(안 제10조)

- 징계나 행정처분권자의 공익제보자 책임감면 조항 추가 신설(7항 추가)
- 권익위 책임가면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신설(8항 추가)

다. 공익제보자 지원 확대(안 제10조)

- 구조금 지급사유를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한 소송비용'으로 확대(1항3호)

라. 보상금 지급사유 추가 신설 및 보상금 신청기간 확대(안 제11조)

- 보상금 지급사유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추가 확대(1항3호라목)

마. 포상금 지급사유 확대(안 제11조의2)

- 포상금 지급사유를 '과태료·과징금 부과' 외에도 '부담금·가산금 등 부과'까지 확대(1항 4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타

- (1) 입법예고(2022.8.25.~9.14.)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취지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함) 개정 사항인 이첩·송부사건의 조사·수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는 의무 조항, 공익제보자 책임감면, 공익제보자 지원 확대 등을 조례에 반영 하려는 것으로 법 적합성 및 입법체계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하겠음.

※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참조).

※ 서울시의 공익제보 대상을 살펴보면, ① 시 소관사무와 관련되고,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신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상의 부패신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서울특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신고를 감사위원회가 받고 있음. 또한, 민생사법경찰단은 법률로 지명받은 17개 분야와 관련된 신고나 제보를 받아 수사를 하고, 결정적인 제보를 한 경우 공익제보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공익제보 처리절차 〉



※ 서울시 홈페이지 참조(<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13996>)

〈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

조 문	주 요 내 용
제8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 이첩·송부사건의 조사수사 결과를 권익위 통보 의무 조항 신설(제5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제5항 및 동 시행령 제11조제2항 개정사항 반영
제10조(공익제보자 지원 등)	- 구조금 지급사유를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한 소송비용’으로 확대(제1항 제3호) - 공익제보자 책임감면 규정 신설(제7항 및 제8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27조제1항제3호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 개정사항 반영
제11조(보상금)	- 보상금 지급사유 추가 신설(제11조제1항제3호라목) - 보상금 신청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제5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4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개정사항 반영
제11조의2(포상금)	- 포상금 지급사유를 ‘과태료·과징금 부과’ 외에 ‘부담금·가산금 등 부과’로 확대(제1항제4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의2 개정사항 반영

-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일이 2021년 10월 21일임에도 감사위원회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1년여 동안 개정하지 않아 동 조례가 상위법령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는 조례의 법적 정합성 및 법체계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감사위원회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적기에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되도록 하는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세부내용 검토

1) 구조금 지급사유 확대(안 제10조제1항제3호)

- 안 제10조제1항제3호는 구조금¹⁾ 지급사유를 “원상회복 관련”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으로 확대하고 있음.²⁾

1) “구조금”은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함.

- 이는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외에 무고·명예훼손 등의 소송에 대해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공익제보자 지원 등) ① (생략) 1.·2. (생략)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 노무사 등의 수입료	제10조(공익제보자 지원 등) ① (생략) 1.·2. (생략) 3.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다만, 공익신고 구조금과 관련하여 상위법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2항 단서)은³⁾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서울시도 긴급한 경우 원활하게 구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2) 공익제보자 책임감면 규정 신설(안 제10조제7항 및 제8항)

- 안 제10조제7항 및 제8항은 상위법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을 반영하여 공익제보자 책임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음.

2) 「공익신고법 보호법」 제27조(구조금)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3.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3) 「공익신고법 보호법」 제27조(구조금)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p>제10조(공익제보자 지원 등) ① (생략) 1. ·2. (생략) <u>3.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 노무사 등의 수입료</u> 4. ·5. (생략) ② ~ ⑥ (생략) <신설> <신설></p>	<p>제10조(공익제보자 지원 등) ① (생략) 1. ·2. (생략) <u>3.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u> 4. ·5. (생략) ② ~ ⑥ (생략) <u>⑦ 공익제보자 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공익제보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제보자 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u> <u>⑧ 공익제보자 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u></p>

- 이는 공익제보 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 이외에도 징계처분과 불리한 행정처분을 책임 감경·면제 대상으로 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기관이 징계·행정처분의 감면 필요성을 인정하면 스스로 책임감면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미 있다고 하겠음.

3)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사유 확대(안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5항, 제11조의2제1항제4호)

- 안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5항, 안 제11조의2제1항제4호는 상위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3항,4)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4호,5) 제25조의2제1호6))을 반영하여 공익제보 보상금7)과 포상금8) 지급사유를 확대하고, 보상금 신청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보상금) ① (생략)</p> <p>1. · 2. (생략)</p> <p>3.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 가. ~ 다. (생략)</p> <p><u><신설></u></p> <p>② ~ ④ (생략)</p> <p>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시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 ⑧ (생략)</p> <p>제11조의2(포상금) ① (생략)</p> <p>1. ~ 3. (생략)</p>	<p>제11조(보상금) ① (생략)</p> <p>1. · 2. (생략)</p> <p>3. _____</p> <p>가. ~ 다. (생략)</p> <p><u>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u></p> <p>② ~ ④ (생략)</p> <p>⑤ _____</p> <p>_____ 3년 _____</p> <p>_____ . _____</p> <p>_____ . _____</p> <p>⑥ ~ ⑧ (생략)</p> <p>제11조의2(포상금) ① (생략)</p> <p>1. ~ 3. (생략)</p>

-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보상금)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보상금의 지급사유) 4.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6)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의2(포상금의 지급사유) 1.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 7) “보상금”은 서울시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로 신청이 있어야만 지급하며, 공익신고의 경우 내부신고자에게만 지급.
- 8) “포상금”은 직접적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도 손실방지, 제도개선 등 공익에 기여한 경우 지급.

<p>4. 과태료, <u>과징금 부과를 통하여</u>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다만 제2조제9호의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p>	<p>4. —— <u>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 처분을 통하여</u> _____ _____ _____.</p>
<p>5. ~ 7. (생략)</p>	<p>5. ~ 7. (생략)</p>
<p>② (생략)</p>	<p>② (생략)</p>

- 이는 공익제보로 인하여 시가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한 경우 법원 판결 없이 행정기관의 환수처분만 있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도 과태료, 과징금 부과에서 과태료, 과징금, 가산금, 부담금 등의 부과시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규정함에 따라 공익제보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다고 하겠음.

다. 종합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등의 두터운 보호를 위한 상위법령(「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법 적합성 및 입법체계의 안정성 확보 측면, 서울시가 공익 제보자의 보호 강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김정덕	입법조사관	최문숙
------	-----	-------	-----